



# 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2017 회계연도 8월 세무업무 처리 지침 통보

1. 관련근거

- 가. 부가가치세법 제32조 [세금계산서 등]
- 나. 부가가치세법 제34조 [세금계산서 발급시기]
- 다. 부가가치세법 제60조 [가산세]

2. 2017년 8월 세무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, 전 소속은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세무처리

○ 매출세금계산서 : 세금계산서 작성월을 8월로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**2017.9.11.(월)**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

※ 5-8호선 UFFICE사용 시 **9.8.(금)까지 수입전표 작성 및 결재 완료**

○ 매입세금계산서 : 세금계산서 작성월을 8월로 수취한 경우 **2017.9.11.(월)**까지 전표 작성 및 결재 완료

○ 착오입력분 정정요청(5-8호선 UFFICE사용 담당자)

- 대상자료 :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지로납부분, 현금영수증
- 대상기간 : 2017.8.1. ~ 8.31.(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)
- 확인사항 : **실물증빙과 비교하여 누락 및 오류 입력여부 등 확인**  
(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거래일자, 공급가액, 세액, 전자및종이세금계산서)
- 요청방법 : 붙임양식 작성 및 첨부하여 문서 회신
- 정정요청기한 : **2017.9.11.(월)**

○ 법인카드 정산

- 8월 사용분 법인카드는 **9.7.(목)**까지 정산 및 회계검토 완료

나. 가산세

○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적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(지연 발급 및 수취 포함)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발생

※9월11일 이내 8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, 공급시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 납부 시 본인귀책사유 발생으로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91조(가산세 등의 정리방법)에 따른 변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망(전략사업실, 영업계획처 등)

붙임 : 계산서 착오입력 정정요청 양식 1부. 끝.

# 서울교통공사



수신자 가1~가51,나1-2, 다1, 마27, 아1-3,나1-아19,나1-아19,자1~자51

주임 **최경아**

부장 **김종선**

팀장 **황진환**

처장 전결 09/04  
**박태성**

협조자

시행 재무처-1434 (2017.09.04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전송 / cka1230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